

학생생활관수칙

제정 : 1998.03.01

개정 : 2017.05.01

개정 : 2020.03.01

개정 : 2021.12.01

우리는 대원대학교의 한 가족으로 학문연구와 인격도야를 위하여 생활관 생활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목적) 본 수칙은 사생들이 생활관 내에서의 명량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며 규칙적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생들로 하여금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생 호실 배정) 한번 배정된 호실은 사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생활관장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호실이나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4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05. 01., 2020. 03. 01.>

내용	시간	학기중	
점 호		22:00~	22:00
폐 문		23:00	23:00

제5조(점호) ① 인원점검은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인원점검은 학생생활관장 또는 학생생활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0. 03. 01.>

③ 인원점검 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01.>

1. 인원 점검
2. 환경 점검 및 환자파악
3. 전열기기 사용 여부

4. 지시사항 이행 여부

5. 기타

제6조(비상인원점검) 비상인원점검은 학생생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개정 2020. 03. 01.>

제7조(게시, 광고의 부착) 게시,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학생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01.>

제8조(외출·외박)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생생활관장 또는 매니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05. 01., 2020. 03. 01., 2021. 12. 01.>

제9조(면회) ① 면회시간은 09:00~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01.>

② 면회자는 면회신청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한 후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③ 면회는 지정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호실 출입을 금한다. 다만, 가족의 방문시에는 학생생활관장 및 관계직원의 허락을 받은 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01., 2021. 12. 01.>

제10조(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1.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시설물과 기물의 훼손

2.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제11조(징계) 징계는 경고처분과 퇴사처분으로 구분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01.>

1. 경고처분 : 벌점 누계 15점에 달한 자

2. 퇴사처분

가. 제12조의 행위를 한 자

나. 벌점 누계가 20점 이상인 자

다.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단체생활에 적합치 못한 질병 보유자

제12조(퇴사 처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부모에게 통보와 동시에 퇴사조치하며 생활관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생활관의 재입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0. 03. 01., 2021. 12. 01.>

1. 생활관내의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학생생활관장과 매니저 및 직원의 지도 계몽에

불응한 자 <개정 2020. 03. 01., 2021. 12. 01.>

2. 무허가 집회를 한 자 및 통제구역(남·여 생활관의 구분지역)을 잠입하거나, 고의적으로 임의 배회한 자
3. 허가받지 않은 전단을 제작 살포한 자 <개정 2021. 12. 01.>
4. 고의 또는 과실로 방화자 <개정 2021. 12. 01.>
5. 절도행위를 한 자 및 폭력을 행사한 자 <개정 2021. 12. 01.>
6. 학칙 위반으로 징계된 자
7. 위험물의 반입 및 사용자
8. 생활관 납부금을 미납한 자

제13조(벌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5점을 과한다. <개정 2021. 12. 01.>

1. 허가 없이 외박한 자
2. 사생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 자(악기연주, 고성방가, 음주, 흡연 소란 행위 등) <개정 2020. 03. 01.>
3. 타 호실의 열쇠를 무단 복제한 자
4. 허가 없이 외부인을 입실 시킨 자
5. 생활관 내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자(완전 변상) <개정 2021. 12. 01.>
6. 허가받지 않은 전열기 및 버너 등을 사용한 자
7. 생활관 내에서 사행행위나 장소를 제공한 자 및 문란한 복장이나 언행을 행한 자 <개정 2021. 12. 01.>
8. 외부인을 입실시켜 취침케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3점을 과한다. <개정 2021. 12. 01.>

1. 허가 받지 않은 전열기기를 반입한 자
2. 허가 없이 지정된 호실을 바꾼 자
3. <삭제 2017. 05. 01.>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벌점 2점을 과한다. <개정 2020. 03. 01., 2021. 12. 01.>

1. 사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자
2. 부대시설 이용을 지정시간 외에 이용한 자
3. 인원점검 시 점검사항 미이행 자 <개정 2021. 12. 01.>
4. 호실의 정리정돈 및 청소가 불량한 자

제14조(선행점제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생활관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관 명예와 전통을 수립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생에게 선행점 5점을 준다. 다만, 선행점은 벌점과 상쇄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1. 생활관 내외의 청결유지에 솔선수범하고 자원봉사한 자
2. 생활관 명예를 높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영위한 자
3. 각종 자격시험이나 공모전에 입상한 자
4. 각 호실의 정리 정돈 및 청소가 양호한 자

제15조(연대 책임) 제10조 각 항 중 1인 이상의 공동 책임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호실 사생 전원에게 각 항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21. 12. 01.>

제16조(세탁) 사생은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는 세탁을 금한다. <개정 2017. 05. 01.>

제17조(부대시설 이용) 모든 부대시설의 이용 시간은 각 시설별 운영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생활관장의 허락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03. 01.>

제18조(긴급사태) 응급을 요하는 환자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사생은 학생생활관장 및 직원에게 즉시 연락하며 학생생활관장 및 직원의 지시를 따른다. <개정 2020. 03. 01.>

제19조(윤리규정) ① 사내에 규정된 통제구역은 학생생활관장의 승인 없이 무단출입 또는 배회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03. 01.>

② 호실 외에 출입 시에는 정복 또는 간소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사생은 윤리에 어긋나는 문란한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생활수칙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수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수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